

瑞山市가스事業者들에 대한過怠料賦課・徵收條例廢止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1999. 7. 23

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9. 7. 23

라. 上程日字 : 1999. 7. 29

2. 提 案 說 明 要 旨 (提 案 說 明 : 地 域 經 濟 課 長 文 哲 柱)

가. 廢 止 理 由
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,
 - 지난 '99.6.30일 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,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'99.7.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
- 관련 조례인 「서산시가스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그동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근거하여
 - '97.1.16일자로 「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」를 제정하여 동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
 - “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하고 있어 민원발생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
- 산업자원부령으로 과태료 부과·징수기준을 정하여 지난 '99.7.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
 -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하위법령인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6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 조례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7. 31 .

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0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2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□ 폐지·이유

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·징수기준이 산업자원부령으로 신설되어 본 조례의 내용이 실효 되었음은 물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.

□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
-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34조
- 행정규제기본법제5조

나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다.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('99.6.23) → 폐지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폐지조례

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폐지 방침 결정

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폐지 계획

법적 근거

- 근거조항 :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개정됨
- 현행법 :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 조례
- 행정규제 기본법 제 5조

업무 현황

- 가스안전에 관한 자율적인 관리체제의 정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48조의 규정에 의거
-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
- 과태료부과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3항【별표4】과태료 부과금액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3항【별표3】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으로 1999. 6. 30일 개정하고 1999. 7. 1일 시행함에 따라
- 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함.

개선 계획 및 조치사항

서산시가스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적용 처리코자 함.

기 타

瑞山市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1999. 7. 23

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9. 7. 23

라. 上程日字 : 1999. 7. 27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: 文化會館長 崔沅榮)

가. 提案理由

- 서산시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통합으로 현행 서산시문화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가 한시적 효력을 갖고 있어
 - 문화회관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통합시키고
 - 사용자에게 가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“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”의 제명을 서산시문화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”로 변경함.

- 서산시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제6조의 유료공연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.
- 사용 및 변경허가 신청기간을 5일 및 3일 이전으로 단축변경하고 사용경합시 처리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
- 사용허가 제한 및 관람객의 입장제한 삭제
- 허가취소등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시 전액반환과 허가취소원 제출기한 1일전으로 변경
- 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및 시장의 재량권 관련 조항 삭제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현행 「서산시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」가 행정기구 관련조례의 통합으로 한시적인 효력을 갖고 있어, 문화회관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와 통합하고,
- 사용자에게 불합리하게 규제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음.
- 분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

- 질의 : 정당 행사시 상대방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할 소지가 있는데, 이를 다소나마

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 제6조제3호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?

- 답변 : 금번 규제완화로 인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, 정당행사처럼 규제완화로 인해 만약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음.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87호
의결년월일	1999. (제 회)

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자	서산시장
제출년월일	1999. 7. 23.

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27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3.
제출자 : 서산시장

1. 개정이유

- 서산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 통합으로 현행 서산시문화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가 한시적 효력을 갖고 폐지됨에 따라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통합시켜 개정.
-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.

2. 주요골자

- “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”의 제명을 “서산시문화회관운영 및사용료징수조례”로 변경함(안 제명).
- 서산시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제6조의 유료공연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1조의2).
- 사용 및 변경허가 신청시 10일 및 5일 이전에서 5일 및 3일 이전으로 기간을 변경 단축하고, 사용신청 경합시 처리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(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).
- 사용허가 제한 조례 제6조의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함.
- 관람객의 입장제한 조례 제15조제3호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.

- 사용료 반환시 전액 반환을 원칙으로 일부 반환 조문을 삭제하고, 허가취소원 제출 기한을 사용5일 이전에서 1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(안 제9조).
- 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조문과 시장의 재량권 조문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함(안 제10조제1항).
- 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의 용어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(안 제1조, 제11조의2).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산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”를 “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대관”을 “운영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10일 이전”을 “5일 이전”으로, “5일 이전”을 “3일 이전”으로 하고, 동조제4항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조본문단서중 “전부 또는 일부”를 “전액”으로 하고, 동조제3호중 “5일 이전”을 “1일 이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중 “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”를 “위반하였을 때”로 하고,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유료공연등) ①회관은 자체 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자체 기획물의 초청·계약·대표관리·입장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.

③관장은 자체 기획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좌석권 차등제·회원제·회원 할인제·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회원 할인제는 입장료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할 수 없다.

⑤예매처의 지정 및 대표수수료나 판매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, 예매대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중 “서산시문화회관징수조례”를 “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”로 한다

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. 신청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소,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

4. 및 5. (생략)

제9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및 2. (생략)

3. 신청자가 사용 5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

제10조(허가의 취소 등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,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및 2. (생략)

3.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
4. (생략)

5.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(생략)

(신설)

(삭제)

4. 및 5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용료의 반환) -----

----- 전액

1. 및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1일 이전-----

제10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-----

1. 및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위반하였을 때.

4 (현행과 같음)

(삭제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유료공연등) ①회관은 자체 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자체 기획물의 초청·계약·대표관리·입장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.

제15조(입장의 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및 2. (생략)
3. 기타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[별지 제1호 서식]

문화회관 사용허가(변경) 신청서

1. ~ 8. (생략)

서산시문화회관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(이하 생략)

③관장은 자체 기획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좌석권·회원제·회원 할인제·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회원 할인제는 입장료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할 수 없다.

⑤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나 판매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, 예매대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제15조(입장의 제한) -----

1. 및 2. (현행과 같음)
(삭제)

[별지 제1호 서식]

문화회관 사용허가(변경) 신청서

1. ~ 8. (생략)

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

(이하 생략)

[별지 제2호 서식]

문화회관사용허가서

1. 사용자 주소 :
대표자 : 주민등록번호 :
2. 사용시설 :
3. 사용목적 및 사유 :
4. 사용허가기간 : 년 월 일 ~ 년 월 일(일간)
시간 : (시간)
(사용회수 : 일 회)
연습시간 :
5. 사용료

사 용 시 설	사 용 료	산 출 기 초	비 고

6. 허가기준 : 이면 허가조건 참조

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함.

년 월 일
서 산 시 장

(이면)

1. 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,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. (예 : 허가 목적과 내용이 다를 때)
2. 사용료를 납부하기 전에는 입장권의 검인을 받을 수 없으며 본 시의 사전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.
3. 공연 당일 대관이 없을 시는 시의 승인을 받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.
4.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속시설비 사용료(냉·난방 제외)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5. 입장권의 매표, 수표는 시에서 감독하되 입장권의 예매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.
6. 공연시 제반 시설물의 사용은 시와 사전 협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.
7. 연예공연 및 영화를 상영코자 할 때에는 공연 5일 전에 영화검열 합격증과 공연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8. 현수막, 현판제작은 사전 협의하여 규격 및 높이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.
9. 공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신고를 필하지 않은 자는 공연할 수 없습니다.
10. 사용상 부주의로 시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.
11.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금액 초과입장금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문예진흥기금을 사용 종료 후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.
12. 외국인의 공연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외국인공연허가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.